

세무관리 정책 (Tax Management Policy)			
최종 수정일	'24. 05. 31.	최초 제정일	'23. 04. 28
Rev.	1	표준번호	-
담당부서	세무섹션		
검토자	재무회계그룹장		
승인자	대표이사 사장		

## 목적

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이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적용범위

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 포스코퓨처엠 전 사업장, 출자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.

## 기본원칙

### 1. 조세 법령 준수

포스코퓨처엠은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세법과 그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 산정 및 적기 납부 등 각 국가에서 부여되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
### 2. 과세당국과의 투명한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

포스코퓨처엠은 각 국가의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고,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임하며, 제도 및 유관 규정·절차의 발전적 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

### 3. 국제 거래상 의무 이행

포스코퓨처엠은 국제 거래상의 세무법규를 준수하고,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,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세 회피 거래 및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행위를 하지 않는다. 또한, 계열사간 거래를 함에 있어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기업 원칙(Arm's length principle) 및 OECD TP Guideline에 따른 '정상가격 산출방식'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한다.

### 4. 지역사회 발전 기여

포스코퓨처엠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는 경정 청구 및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. 또한 합법적 절세재원에 따른 성장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.

## 실행방안

### 1.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

대내·외 경영환경, 사업 구조 및 거래 분석을 모니터링하는 사내 세무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, 리스크 평가검토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. 모든 세무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며, 조세와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.

### 2. 이사회 및 세무담당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

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, 세무담당 임직원은 포스코퓨처엠의 세무 정책에 따라 각 국가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고,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.

### 3. 외부 전문기관 활용

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고, 중요한 의사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.

### 4. 투명한 정보 공개

대한민국 및 사업의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.